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시행 구역	구역명칭						시행면적	㎡		
	위 치						건축물	(무허가 동 동)		
	거주가구 및 인구		가구 (인)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목별	지목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동의 내역	토지면적		토지 소유자수				건축물 소유자수			
	대상면적	㎡	대상 소유자수		인		대상 소유자수		인	
	동의면적 (동의율)	㎡ (%)	동의자수 (동의율)		인 (%)		동의자수 (동의율)		인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시행 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			사업비		원		
	부지 명칭		대지면적		㎡		주용도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		대 ㎡			

사업 시행 계획	주택	공급 구분	주택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계									
		분양									
		임대									
	정비 기반 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건축물	철거	이전	공작물	철거	이전				
		동	동	개소		개소					
	개수대상 건축물		동	임시거주계획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필지수		면적		권리자수				
					㎡						
		건축물	동수		연면적		권리자수				
			㎡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 공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대책 세대					

일괄 처리 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도로공사시행허가 ()
	도로점용허가 ()	사방지지정해제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
	농지전용신고 ()	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 ()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입목벌채등의허가·신고 ()	하천공사시행허가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일괄 처리 사항	하천점용허가 ()	일반수도사업인가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대규모점포의 등록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공유지대부·사용허가 ()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공장설립승인·신고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신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소방동의·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기·수질·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신고()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중지·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